제1차, 아동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국회토론회

—

아동·청소년시설주변, 청소년유해업소난립에 따른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정태호

주 관 | 한국 Korea Child Welfare Center Association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아이들을 위해 함께 목소리 내주세요.
저희의 작은 시작이 큰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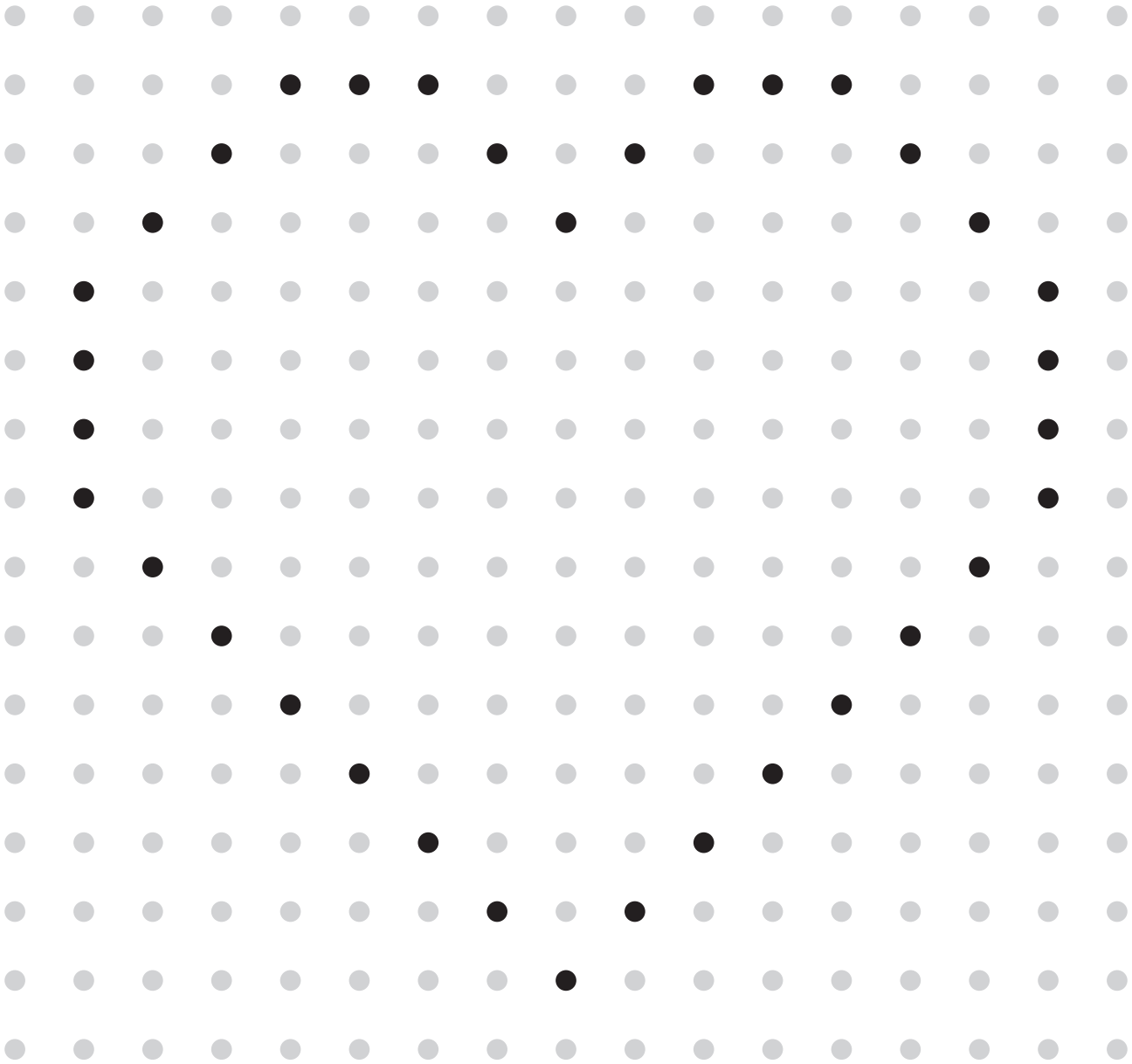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정태호

주 관 | 한국 Korea Child Welfare Center Association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목차

환영사 / 축사

환 영 사	국회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장
환 영 사	국회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환 영 사	국회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환 영 사	옥경원 대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축 사	국회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축 사	오승환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축 사	정선욱 회장	한국아동복지학회

* 퍼포먼스 : [아이들이 먼저다] 키다리프로젝트 굿즈 부착식

토론

좌 장	전재진 정무비서관	박병석 국회의장실
주제발표	전구훈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토 론	김성벽 과장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토 론	손보라 시설장	웅상중앙지역아동센터
토 론	정정호 교수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조순실 대표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토 론	최신광 팀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질의응답 및 폐회

환 영 사

국회의원 **정 춘 숙**

안녕하세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바쁘신 중에 '아동 · 청소년시설 주변, 청소년유해업소 난립에 따른 국회토론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함께 지난 여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했으나,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연기가 되어 지금에서야 열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느라 모두가 분주합니다. 힘겨워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지 주위를 돌아보고 더욱 더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워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서 사회 전체로 확장된 지 이미 오래됐으며 지역사회, 아동복지시설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살펴보면 30.9%의 아동은 '우리 동네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생활 곳곳이 그

렇습니다. 도로의 교통사고부터 가정, 여가시설, 교육시설 내 안전사고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하는 각종 유해매체부터, 평범한 주택가나 아동 · 청소년시설 주변에 버젓이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청소년 유해업소들도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는 어른들의 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데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아이들을 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여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 영 사

국회의원 **김 성 주**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1차 아동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국회 토론회를 함께 준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각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아동·청소년시설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WHO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시설의 설치 가능한 장소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시설을 설립할 때 일정 범위 내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곳에 한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모순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먼저 설치된 장소 인근에 청소년 유해시설의 진입이 허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가 변경

되거나 법인화를 추진하는 경우, 주변에 진입한 유해시설 탓에 오히려 시설을 강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유해시설이 아동·청소년시설 인근에 진입하면서 오히려 아동·청소년시설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제도의 허점 탓에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최우선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아동의 권리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해시설 설립 시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 아동·청소년 시설을 확인하고 허가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시설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유해업소 문제와 제도적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환 영 사

국회의원 **정 태 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태호 입니다.
〈아동·청소년시설주변, 청소년유해업소 난립에 따른 국회토론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행사를 함께 주최해주신 김성주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과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님, 전재진 정무비서관님, 전구훈 교수님 그리고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해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잘 알려진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는 '상대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설립의 법적근거인 「아동복지법」에는 별도의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근거가 부재합니다.

대신 하위 시행규칙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입지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먼저 청소년유해시설이 설치된 곳 50미터 이내에는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불가능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먼저 설치된 곳 바로 옆 건물에는 청소년 유해시설의 진입이 가능해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교육이 우선되는 과거의 인식을 넘어 교육과 돌봄을 아이들의 성장의 한 과정으로 보는 인식을 확산하는 공유의 장이 되길 바라며, 열띤 토론을 통해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정 태 호

환 영 사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옥 경 원**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다. 임기의 변곡점을 넘어 4년 차를 맞이할 즈음, 코로나19의 습격은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 무역, 과학, 사회와 문화의 판세를 온통 뒤흔들면서 우리는 혼란 속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에게 취해야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세계 각 국의 대응을 통해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그 중심에 'K방역'이라는 전대미문의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 뿌듯한 자긍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지난 메르스의 뼈아픈 교훈들이 아로새겨져 국가 방역 안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정신을 함께 녹여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팬데믹 8개월 만에 인구 100만 명 당 코로나19 사망자는 미국이 679.06명, 캐나다는 267.57명에 비해 한국은 8.81명에 불과하다. 매우 보수적으로 전망을 내 놓는 IMF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1.9%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코로나 충격을 잘 이겨내는 것으로 평가한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입증해주기에 충분했다.

이토록 변화에 있어서 민첩하고, 여러 분야에서 역시 기염을 토하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도약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켠에 늘 아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미래세대에 대한 염려다. 경제성장과 자본의 총량 확대, 그리고 정치적 역량에 따라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나뉘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헬조선 논란에서부터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에서 비혼의 증가라는 우리사회 저변의 위

기요인들이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여러 요인 중에서 나는 아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싶다. 넬슨만델라가 말했던 '시대정신'. 곧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모습보다 더 날카롭게 그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라고 했던 연설처럼 K방역에 대한 전 국민이 이룬 시대정신의 승리와 같이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과제들이 UN이 정한 '아동최우선주의의 원칙'대로 '진정한 시대정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행정부와 현장은 늘 팽팽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다. 행정부는 TEXT에 충실한 행정 집행을 해야 하고 현장은 현장 생태계의 특성상 CONTEXT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한다. 여기에 따른 괴리감은 법률을 비롯한 TEXT의 해석에 따라 타당한 CONTEXT라 할지라도 해결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입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TEXT와 CONTEXT의 중심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인간다운, 무엇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중재의 역할이다. 그래서 정치는 너무나 중요하고 국민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신 대목이 있다. 직장환경 조성이나 육아비용, 교육재정의 획기적 투자와 반값등록금과 같은 공교육비용의 국가책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등은 대개 구조적인 확립을 전제한다. 반면, 체계들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CONTEXT 생

태계는 늘 법률과 지침들의 정합성속에서 갈등한다. 오늘 토론하는 아동복지시설 주변 유해시설의 난립에 따른 문제들도 거기에 포함된다. 그 괴리감은 법 앞에 평등한 헌법에 기초하여 법률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차별로 이어지는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사회적 옹호활동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나는 이번 토론을 통해 어떤 결론에 도달하자는 요구보다 '우리보다 더 오래 대한민국에 살아갈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기성세대의 몸부림이고 싶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님, 보건복지위원이며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님, 사회복지인으로 함께 주최하신 정태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3년 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조용히 봉사하시고 남다른 아이 사랑을 실천해 오셨던 이해식 의원님,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 첫 관문으로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여 단일임금체계 실현과 아동연대를 외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님께도 지면을 통해 진심의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토론 발제자로 수고해주신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전구훈 교수님, 좌장으로 토론회를 멋지게 이끄실 전재진 정무비서관께도 감사드리며 함께 길을 찾기위해 토론자로 참여하는 학계, 정부, 현장 실천가들께도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

축 사

국회의원 **이 해 식**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해식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애쓰시는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비롯한 돌봄 관계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아동·청소년시설주변, 청소년유해업소 난립에 따른 국회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김성주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정태호 의원님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타인-주변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인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청소보호법은 유해시설이 없는 곳에 아동·청소년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해시설이 아동·청소년 시설 주변에 들어서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설립된 아동·청소년 시설이 뒤늦게 들어온 유해시설에 밀려 강제 이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법과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의 공간이 유해시설에 밀려 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아동·청소년 돌봄 관계자에게 상실과 허탈감을 안겨줘서도 안됩니다.

이번 토론회가 각종 위해시설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 10.
국회의원 이해식

축 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오 승 환**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오승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중에 아동 · 청소년 복지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제1차, 아동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국회토론회'를 주관하신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님과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동 · 청소년 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는 특히 환경적 측면, 인력과 임금체계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시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우리 협회도 수년간 지역아동센터 등 국고지원시설의 단일임금적용과 예산 확충을 주장하며 연대해왔습니다.

더불어 이번 국회토론회의 주제와 같이 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도 시급합니다. 아동 · 청소년이 자주 왕래할 아동 · 청소년복지시설 주변으로 유해시설이 진입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이 아직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어렵게 유해시설이 없는 장소를 찾아 시설을 설립하여도 이후 진입하는 유해시설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김성주, 정춘숙, 정태호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해식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 기대하겠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동 · 청소년 복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함께 노력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3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오승환

축 사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정 선 욱**

지난 8월에 발표된 제2차 아동정책 기본 계획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아동 중심”입니다. 아동 중심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 청소년 이용시설의 주변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집, 학교, 이용시설, 이들이 오가는 길, 모두가 똑같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성장과 발달을 자극하는 것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이 어디에 있든, 아동 중심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교육이냐 돌봄이냐, 학교냐 지역아동센터냐를 떠나, 가장 중요한 “아동 중심”의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학교를 포함한 모든 아동 청소년 이용시설이 “아동 중심”환경을 갖추기 위해,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 19 상황의 변화로 토론회가 무산될 뻔한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굳은 의지로 토론회를 성사시킨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례

좌장 **전 재 진** 정무비서관 | 박병석 국회의장실

주제 **아동·청소년시설 주변 유해환경 관련 형평성에 관한 고찰**
전 구 훈 교수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1 _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최신광 51

2 _ 정부의 형평성있는 정책을 요청합니다 / 조순실 55

3 _ 지역사회 내 촘촘한 아동돌봄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언 / 정정호 61

4 _ 청소년보호법,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유해업소에게 자유롭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차별과 불공정의 악법인가? / 손보라 67

5 _ 아동복지시설 소관 법령에 환경보호관련 규정이 바람직 / 김성벽 81

토론 주제

—

아동 · 청소년시설 주변 유해환경 관련 형평성에 관한 고찰

전 구 훈 교수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아동·청소년시설 주변 유해환경 관련 형평성에 관한 고찰

전 구 훈 교수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1. 들어가며

2.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3.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

4. 나오며

1. 들어가며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의 학습권과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주변 환경이란 성격 및 사고방식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은 아동·청소년의 제반활동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하여야 한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WHO에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각종 유해업소가 난립하여 아동·청소년의 탈선·비행을 유발하게 되자 1967년 학교보건법의 형태로 규제를 하였고, 최근에는 교육환경보호법을 제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50m – 200m 지역에 대해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해시설의 설치를 법으로 제한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아동·청소년 시설을 설립할 때 유해시설이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를 중심으로 유해시설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한다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은 아동·청소년 시설에 대한 규제의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 유해시설은 아동·청소년시설 근처에 개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보다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회 구성원의 인식에 따라 학교 중심으로 법이 구성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활동보다는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정책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아동·청소년 현장에서 다른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차별은, 어려운 현장에서 헌신했던 실무자에게 더 큰 상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기존에 운영된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 새롭게 신설되는 시설

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부당함에 대한 건의가 오히려 속 좁음으로 몰고 가는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

물리적인 환경이 우리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불합리, 불공정의 현실에 대해 건설적인 제언이 가능하고, 현실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심리·정서적으로 더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다.

2. 아동 · 청소년 유해환경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있는 물리적·문화적·사회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정서적·정신적인 성장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적·교육적 공해'로 규정할 수 있다.

유해환경은 환경의 기본적 성격에 따라 ①자연적 유해환경, ②인위적 유해환경으로, 기능적 측면에서는 ①물리적 환경, ②사회·심리적 환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구역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은 물론, 경쟁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인 유해환경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해환경으로 언급하는 것은 ①음란, 폭력적인 영상물, 인쇄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②술·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③성기구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건, ④유해업소, ⑤폭력·학대 등의 행위, ⑥유해지역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본 발제는 인위적 유해환경, 물리적 환경의 대표적인 유해업소와 아동·청소년 시설에 집중하여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법에서는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데 방해가 되는 물리적 환경인 유해업소

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교육부가 집행을 총괄하고 있다. 그 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정하는 유해환경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에 제정되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하고,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 · 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그 외에 학교설립예정지도 설정 대상에 포함된다. 〈표 1〉 참조

<표1> 교육환경 설정대상

구분	대상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교 설립 예정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동법 제8조와 시행령 제21조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기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를 말한다.

특히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중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구분하였다.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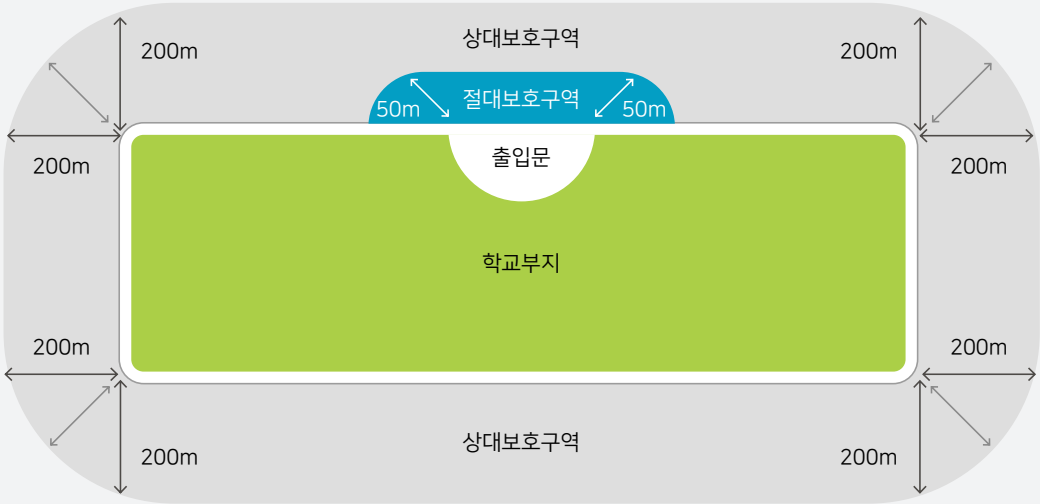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및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설립할 수 있다. 〈부록 1〉참조

2)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무차별, 안정된 가정환경에서의 양육,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아동과 관련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시설***[1] 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아동복지법 제 50조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해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주변에 보건 · 위생 · 급수 · 안전 ·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4. 16>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제24조 관련)

1. 공통 시설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 · 위생 · 급수 · 안전 ·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할 수 있고,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할 수 있으며, 법 제5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1]

1)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 · 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 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 연극 · 영화 · 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 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 규정을 교육환경법과 비교해 보면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절대보호구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8호까지의 시설은 단서규정에 의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가 있는 부지에는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3)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1997년에 제정되었다.

"개방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의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의 청소년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의 입법취지를 가지고 시작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과 주변유해환경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정책적 관점에 비중이 실리게 되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항에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하고 있다. 업소의 구분은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이루어 진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규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은 팽창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유해환경에 대해 '방어적이고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예방적인'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유해매체 및 환경을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시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항

가.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 · 생산 ·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 · 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 · 생산 ·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

다음세대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위해 학교와 아동·청소년 시설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을 설치할 때 유해시설 유무를 확인하여 유해시설이 없는 경우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기울어진 운동장)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기관은 다양하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무수히 많은 기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과 제도가 운영되어 있다. 유해시설의 경우에도 학교 인근에는 설치할 수 없지만 그밖에 기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규제가 많아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반대 상황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둘째, 유해시설로 기울어진 운동장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 주변 50m 이내에 유해시설 유무를

확인하여 유해시설이 없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은 당연하지만 대도시권에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시설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고, 또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되는 조건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해 왔다. 그런데 바로 옆에 유해시설이 설치(유해시설은 50m 이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더라도 설립이 가능)되는 것을 목격하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변경이나 법인화의 과정에서 늦게 들어온 유해시설로 인해 오랫 동안 운영해 왔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신고가 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는 상황까지 경험하게 된다면 이러한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사례 _ 1

A. 지역아동센터 설립 전 ▶ 시·군·구 설치 신고 ▶ 청소년유해시설 유무 확인 (주변 50M 이내)

▶ 설치 가능 (유해시설 없을 경우 시)

B. 지역아동센터 설립 후 ▶ 청소년유해시설 설립가능 (지역아동센터 근처)

- A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과정을 나타냄.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기 이전에는 시설 주변의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시설 유무를 확인함. 유해시설이 없을 경우에만, 지역아동센터 설치 가능 함. 반면, B의 경우와 같이 지역아동센터가 설립 된 이후에는 청소년유해시설이 지역아동센터 근처에 설치가 가능함.

-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때 유해시설 유무를 확인 하는 것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기 위함임. 하지만 법의 허점으로 인하여 지역아동센터 근처에 청소년유해시설의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 한 실정임.

- 현장에서는 애초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허점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 됨.

사례 _ 2

B. 지역아동센터 설립 후 ▶ **청소년유해시설 설립가능** (지역아동센터 근처)

C. 지역아동센터 설립 후 ▶ **청소년유해시설 진입**

▶ **지역아동센터 대표변경 혹은 법인화 신청** ▶ **불허** (유해시설이 있다는 이유)

- 현장에서의 문제는 지역아동센터 설립 이후 시설의 운영에서도 발생 됨. 처음 시설을 설치할 당시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를 파악하여 유해시설이 없다는 것을 확인 한 뒤 시설을 설립 함.

- 하지만, 시설 설립 이후 주변이 진입한 청소년 유해시설로 인해 강제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이 대표자를 변경 하거나 법인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나중에 생겨난 청소년 유해시설로 인하여 지역아동센터는 강제이전을 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함.

> “ 저희가 14년 동안 쭉 아이들을 돌봐 왔어요. (법인화 과정에서 인근에 설치된 청소년 유해시설로 인해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유해시설이 없는 아파트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 - 법인화 과정에서 설립 취소를 당한 센터장 - ”

> “ 지역아동센터가 주택가 안에 있다기보다 아이들이 오기 편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중략) 법인화의 요건을 갖추면서 지역아동센터를 갖추기가 어렵다.
> - 최선 서울시의원 - ”

> “ 촘촘하게 돌봄이 있으려면... 특히 대도시 권역에서는 (유해시설관련 민원사항)을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 자체를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 A지역 협의회장 - ”

셋째, 정책 사업에 기울어진 운동장

아동에 대한 돌봄에 대한 사회의 욕구가 많아지면서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의욕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기관에 대한 지원책보다는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데 초점을 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같은 돌봄을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주변의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시설 유무에 대한 확인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부터 문제이다.

사례 _ 3

A. 지역아동센터 설립 전 ▶ 시·군·구 설치 신고 ▶ 청소년유해시설 유무 확인 (주변 50M 이내)
▶ 설치 가능 (유해시설 없을 경우 시)

D.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립 전 ▶ 서울시 설치 신고 ▶ 청소년유해시설 유무 확인 (주변 50M 이내)
▶ 설치 가능 (유해시설이 있어도)

-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시설 주변의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시설 유무를 확인함. 유해시설이 없을 경우에만 지역아동센터 설치 가능 함. 반면, 같은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인 D의 경우는 권장사항임.

>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규정상 강제조항은 아니구요, 문서적으로 권고사항이고....
> - 서울시청 관계자 -

> 아동 돌봄이라는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두 기관(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이 서로 다른 지침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서울시의원 -

4. 나오며

지난 4년간 공동모금회에서 배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올라오는 많은 프로포절을 살펴보았다. 아이들을 돌보기에도 바쁜 사회복지사들이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였다.

또한 복권기금사업으로 야간 돌봄이나 방학 중 사업이 운영되도록 예산을 배분한 기억도 있다. 정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할 기초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른 행정업무도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해 왔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교육기관으로, 유해시설로, 정책 사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떨어진 지역아동센터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이다.

어려운 역할을 감당해 왔으니 과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점차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첫째, 아동·청소년 우선의 원칙을 유지하자. 학교에 있을 때 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보호와 지역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호가 상이하다면 불합리하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 돌봄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삶의 공간인 지역에서도 동일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적 지원뿐만 아니라 유해시설로 부터의 보호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할 것이다. 이는 유해시설 설립 시 학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시설도 확인하고 허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운영되는 사업과 기존 사업에 대해 차별적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인근에 유해시설이 있으면 설치가 안 되는데, 유해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옆에 설치가 가능한 것 역시 불합리하다.

셋째, 규제가 아니라 예방적 차원으로 나아가자.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유해한 정보와 환경은 시공을 초월하여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공간에 대한 규제만으로 보호가 가능하지 않으며,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에 대해 고민하고 지원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은주(2007). 학교주변 유해환경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학술대호 발표논문집. pp.145-146.
* 나종혜(2013). 아동 발달학적으로 본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는 공간. 건축 57(9). pp.25-28.
* 심수현(2020). 청소년유해환경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간회귀분석의 적용. 경찰학연구. 20(2). pp.211-233.
* 이명선(2000). 학교주변 유해환경 실태 및 제도에 관한 고찰. 보건과 복지, 3. pp.51-69.
* 조흥기(2011). 교육환경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초층학교 위치선정 및 통학환경을 중심으로 - .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역할과 사명. 2002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경기·인천 워크샵 자료집.
* 청소년보호위원회(2014).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자료집.
* 황세원·김효진·최정선(2017). 미취학 아동의 보육 및 교육시설 입지환경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1(2). pp.219-246.
* Horelli, L. (2007). Constructing a theoretical frame work for environmental child friendliness.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s 17(4): 267-292.
* Nordstrom, M. (2009). Children's view on child-friendly environments in different geographical culture and social neighbourhoods. Urban Studies. 47(3): 514-528.
* Olds, A. (2001). Child Care Design Guide. MD: McGraw-Hill Companies.

부록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의 시설의 종류

NO	대상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X	X	X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X	X	X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X	X	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X	X	X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시설	X	X	X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 배출시설	X	X	X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X	X	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X	X	X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X	X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 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 · 문중자연장지 제외)
10	도축업 시설	X	X	X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X	X	X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X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X	X	X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X	X	X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대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15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X	X	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X	X	X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NO	대상				
17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X	X	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자동판매기	O	X	O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O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	게임물 시설	X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21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O	초등O 중고등X	O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X	X	X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X	X	X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O	X	O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O	X	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X	X	X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호텔업	X	X	X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8	만화대여업	O	X	O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
2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x	X	x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O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부록 2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제24조 관련)

1. 공통 시설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 · 위생 · 급수 · 안전 ·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할 수 있고,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할 수 있으며, 법 제5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할 수 있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 ·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나)부터 라)까지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 및 마)부터 아)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거실

① 적당한 난방 및 통풍 시설을 하고, 상당 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복도 · 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침실 1개의 정원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6명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허약아 · 미숙아 · 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 ·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 · 샤워 및 세면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 · 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 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변기의 수는 아동 5명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수 · 배수시설

① 급수 · 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빗물 · 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2)가)부터 카)까지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나)부터 라)까지의 설비 상호간 및 2)바)부터 자)까지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2)가) 및 마)부터 아)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아동 10명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2)가)부터 카)까지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가)부터 라)까지의 설비 상호간 및 2)바)부터 자)까지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2)가) 및 마)부터 아)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시설별 기준

가.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강당 또는 오락실: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서실: 열람석과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심리검사 · 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 ·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심리검사 · 치료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심리검사 · 치료실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 ·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자립지원시설

복도 · 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명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정원은 2명 이하로 한다.

마. 아동상담소

1)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심리검사 · 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 이상

4)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5) 자료실 또는 대기실: 16.5제곱미터 이상(30명 이상 시설만 해당한다)

바. 지역아동센터

사무실 · 조리실 · 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사.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

1)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별 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강당, 오락실,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사업별 시설기준

가. 개요

1) 아동복지시설이 고유사업 외에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고유사업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이 1개인 경우에는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 · 치료실, 조리실 · 식당 및 도서실을 고유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아동가정지원사업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다. 아동주간보호사업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거실: 33제곱미터 이상

라. 아동전문상담사업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심리검사 · 치료실: 33제곱미터 이상

마. 학대아동보호사업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3) 심리검사 · 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

바. 공동생활가정사업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사무실 · 조리실 · 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아동의 수가 20명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토론 01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최 신 광 팀장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 TF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최 신 광 팀장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 TF

토론 02

—

정부의 형평성있는 정책을 요청합니다

조 순 실 대표 |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정부의 형평성있는 정책을 요청합니다

조 순 실 대표 |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발제자께서 유해환경 사업이 팽창하고 있는 현실에서 방어적이고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에 동의합니다. N번방 사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범들이 솜방망이로 처벌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성인 인증없이도 조건만남 등 100여개의 성매매 어플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두순과 같은 흉악한 성범죄자가 10여년 만에 피해자가 사는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법적 사회적 유해환경은 세계 최악입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유해환경에 노출된 아동들을 보호하는 일을 해온 민간아동복지시설은 지금까지 운영과 활동을 인정받지 못하고

유해환경 규제에 묶여 법인설립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종의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유해환경 규제는 권고사항으로 머물러,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정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사)들꽃청소년세상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로는 서울시 관악구에 청소년지역아동센터 1개소와 청소년그룹홈(공동생활가정) 2가정, 안산시에 청소년그룹홈 7가정이 있습니다. 다년간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중 기본적인 어려움은 청소년들과 실무자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인 전세집을 임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4~7명의 청소년들 다수가 살아갈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얻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관악구와 안산시에서 임대주인의 허락을 받고 집안의 상태와 경제적인 여건까지 고려한 적절한 집을 찾았다하더라도 인근에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근접거리 내에 있어서 집을 얻기가 어려웠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안산에 20여 년 전부터 대안학교인 들꽃피는학교를 운영하다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공립 대안학교로 인가받으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 건너에 노래방이 생겨서 설립 인가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청소년자립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카페로 전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총 27개소 중 법인시설이 5개소에 불과하며, 개인과 단체시설이 22개소입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법인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로써 보다 나은 예산지원을 합니다. 비법인시설의 지역아동센터는 당연히 법인시설(사회적협동조합 포함)로 전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껏 운영해오던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 환경은 주로 아파트단지가 아닌 빌라나 다가구주택이 많은 차상위계층 시민들이 살아가는 주거환경이며, 이러한 지역은 주거지와 유해시설이 뒤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들은 정부의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시설이 즐비한 지역사회환경 속에서 이전지를 찾고 있으나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전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이전하기 어

려운 실정입니다.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22개 비법인시설 중 인근에 노래방과 호프집 등 유흥업소가 있어서 이사를 하거나 정원을 축소해야 하는 곳은 50%에 달합니다.

2004년 당시 아동복지법 제16조 중에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두 단어가 삽입되어 민간아동복지시설들이 열악한 처우였지만 법적인 보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수 차례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거쳐서 현재는 제52조 1항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편입되었습니다. 민간개인시설 운영자들은 그간 물리적인 공간마련의 어려움과 저임금, 그리고 턱없는 운영비 부족을 감내하면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돌보고 교육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취약지역의 거주자인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쉼터이자 문화적, 사회적인 돌봄과 교육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사랑하는 수많은 실무자들의 땀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결실입니다.

정부는 국가를 대신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운영되어지는 수많은 지역아동센터들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최우선의 이익에 합당하는 성과를 내도록 격려하고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유사한 시립시설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유해환경과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규제를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수정해서 형평성있고 일관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토론 03

—

지역사회 내 촘촘한 아동돌봄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언

정 정 호 교수 |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역사회 내 촘촘한 아동돌봄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언

정 정 호 교수 |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아동돌봄 체계의 핵심적인 기능을 감당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
- 최근 나타나는 공공 돌봄시설의 증가는 매우 반갑고 필요한 흐름이지만,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체계에서 빈곤아동과 방임 고위험 아동들(특히, 초등학생)에게 부모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기관은 지역아동센터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2020년 코비드 19의 확산 우려 속에서 많은 빈곤아동들이 갑작스러운 휴교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지역아동센터는 양육자가 근로를 쉴 수 없거나 또는 적절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가정의 아동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식사 제공, 심지어 학습이라는 학교의 역할까지 대신하면서 필수적인 긴급돌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존재가치를 분명히 보여주었음.

_ 지역아동센터 수가 많다고 하지만, 주 이용자가 아동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임을 감안할 때,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참사'와 같은 일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내 아동돌봄 체계는 더욱 촘촘하게 설치, 운영될 수 있어야 함.

_ 한편,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들의 주거지와 학교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함.
_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주거지 혹은 학교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이용할 수 없는 아동들, 혹은 거리가 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아동들의 어려운 상황을 흔하게 들을 수 있음.

_ 그러므로 실제적인 아동보호와 발달지원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단순히 규제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을 갖추어야 할 것임.

_ 한편, 분명히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원해 온 아동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시설 = 개인자산 혹은 개인영리사업'이라는 시각 속에서, 상당수 개인시설(약 60~70%)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해 온 것도 사실임. 그리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지원의 제한과 한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_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서 법인화 논의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됨.

_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의도치 않게 오히려 시대의 요구인 '지역사회 내 촘촘한 아동돌봄체계의 형성과 발달'을 막

는 기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임.

- 단순한 개인사업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의 변경이나 법인화의 과정에서 늦게 들어 온 유해시설로 인해 오랫동안 운영해 왔던 지역아동센터가 신고가 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용아동들과 부모들에게 가장 해로운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임.
- 모든 정책적 노력은 포용국가 아동복지정책에서 제시한 바대로, '아동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임.

토론 04

—

청소년보호법,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유해업소에게 자유롭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차별과 불공정의 악법인가?

손 보 라 시설장 | 웅상중앙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보호법,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유해업소에게 자유롭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차별과 불공정의 악법인가?

손 보 라 시설장 | 웅상중앙지역아동센터

2007년 경남 양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신고하여 설립한 뒤 벌써 13년이 지났다. 설립 당시 지역아동센터는 양산시 신도시개발 지구에 있었으며 읍 · 면 · 리에 위치한 아주 작은 시골이었다. 현재는 읍 · 면 · 리에서 동(洞)으로 변환되었다. 도시화로 인한 외부환경의 변화는 작은 시골 마을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설립 당시만 해도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의 다른 기관들처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의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기 위하여 설치 전 시군구에 협조를 요청하고 신고를 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설치

* 설치 전 상담 협조

1) 아동복지시설은 설치·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 제출 전에 관할 시·군·구청장과 사전협의 후 설치·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

2)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 상담 요청 시, 관할 지역의 돌봄 수요, 입지조건,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 안내하는 등 적극 협조

* 시설입지 조건

1)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함**

- 단독대지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수평거리 측정

- 공동주택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시설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거리 측정

2) **쾌적한 돌봄환경 및 아동안전을 위해 시설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이 아닌곳으로 설치되도록 유도 필요**

가 명시되어 있다.

유해업소의 사전적 의미

유해업소 : (명사)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을 벌이거나 상품화하는 업소(국어사전)

「청소년보호법유해업소」 제2조 제5호 "가"목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 · 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50미터 이내 시설 설치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노래연습장 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서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 5조 제3항의 단서에서 청소년 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출입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청소년실을 갖추더라도 청소년실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당 노래연습장업 전체가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단서조항이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노래연습장업의 청소년 실 구비여부와 관계없이「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류」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은「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이므로 지역아동센터는 노래연습장 50미터이내에 설치할 수 없음

다시 말하자면「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에서의 청소년 유해시설은 청소년들이 출입·고용이 되지 못하는 곳을 말한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다함께 돌봄기관의 시설입지 조건은 어떻게 될까?

다함께 돌봄기관의 시설입지 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지역 내 공적 돌봄서비스 현황 및 각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감안하여 , 다함게 돌봄센터가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시 **보건 · 위생 · 급수 · 안전 ·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장소를 선정
- 초등학생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 돌봄부서와 건축 및 기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함께 돌봄센터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다함께 돌봄기관 시설 입지조건에는 특이하게 "권장사항"이라는 문구가 있다
권장사항이라고 함은 국어사전에 **"강제력이 없이 권하여 장려하는 일의 항목이나 내용"** 으로 명시가 되어있다.

권장사항

1. 시설 50미터 주위에「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가 없는곳

- 단독대지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치적으로 대지 경계선을부터 최단 수평거리 측정
- 공동주택 내에서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시설이 위치한 등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다함께 돌봄센터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거리 측정

2.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 (아동의 활동실에 한정)
3.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에 위치하는 곳 (그 이상의 거리인 경우라도 해당 센터가 등하원 지원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동일하게 간주)
4. 일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는 곳
5. 옥외활동(옥외놀이, 체험활동 등)이 원활한 곳과 인접한 곳

같은 청소년보호법인데 지역아동센터는 "의무사항"이며, 다함께 돌봄은 "권장사항"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또한 예산지원에서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지역아동센터는 시군구로 신고를 한 후 2년간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118)

1) 기존지원시설 : 2019년 이전 운영비 지원시설 중 심화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선정
2) 신구지원시설 : 24개월 운영 신규시설 중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된 시설 중 설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흔히 지역아동센터를 개소 할 때 기본적으로 현재 약 3억 정도의 시설의 자

부담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 금액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시설물, 기자재, 그리고 2년간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운영비이다. 지역아동센터를 개소 할 시, 시군구 마다 다른 경우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통장 잔고금액이 1억 5천만원이 기본운영비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체온계를(비대면) 구입하기 위해 시군구에 의뢰하니 1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산취득으로 간주되어 구입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심지어는 8년간 최대한 고쳐서 사용한 사무용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니, 그 또한 "자산취득"으로 구입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35만원의 조립식을 후원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후원금으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함께 돌봄센터의 개소는 '설치비,기자재비'가 지급된다는 것부터 지역아동센터와 차이가 드러난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개소

가. 설치비
시설 리모델링비는 기본이며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부대경비는 지원이 된다.
(개소당 50백만원)

나. 기자재비
사무기기, 가전제품, 학습기자재, 안전용품, 등 시설 필수 비치 기자재. 장비구입비 지원이 된다.
(개소당 20백만원 = 국비전액)
  = 사무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CCTV, 안전용품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

다. 인건비
센터장 1인과 시간제 돌봄선생님 2인의 인건비가 지급이 된다.
(월급여,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라. 운영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기타운영비
개소당 월 30만원

지역아동센터들 중 시설의 노후나 외부적 이유로 이전 및 협동조합 전환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도 이전이 힘든 요소가 여러 가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설치비와 기자재 비용이다.
부대 경비가 다시 자부담이 되거나, 후원을 받아야지만 가능하기에 다들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이전을 하지 못하다. 이전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비용 등이 지역아동센터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9명의 시설 이용 아동과 종사자가 근무할 청소년유해시설이 없는 곳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이 없다. 최소한의 82.5제곱미터가 되어야 하며, 아동1인당 3.3제곱미터 이상,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사무실, 조리실, 식당, 집단지도실만 산정하고 있다. 이전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비용 등이 지역아동센터의 부담이 되기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까지만 살펴보아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의 출발점이 완전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원들은 어떠한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성북 · 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건강과에서는 “학원 근처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학원이 이미 설립 · 운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해업소의 설치가 불가하다고 할 경우 유해업소를 설치하려는 자에게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이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제한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제한은 가능한 최소로 해야 하므로 학원법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업소가 학원 등의 학습자에게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등이 있는 동일 건축물 안에서의 유해업소 설치 가능 여부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라고 다소간의 장벽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관련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물론 지역아동센터의 신고 시기에는 조건 자체가 어떤 청소년유해시설도 50m 거리 내에 존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건전한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심지어 양산에 세워진 해당 센터의 경우에는 주변에 어떤 건물조차 세워지지 않았던 터라 청소년유해시설의 무분별한 허용은 어쩌면 청소년보호법의 접근 자체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반음식점"은 어떨까? 일반음식점은 청소년입장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많아질 것이다.
"일반음식점" 중 고기집, 치킨집은 유해업소일까?
"일반음식점" 중에서 호프, 소주방 등은 유해업소일까?

일반 음식점은 모두 청소년들의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음주를 하지 않으면 된다. 다시 말해 부모님과 함께 입장을 해서 옆에 앉아서 식사만 하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간혹, 부모님의 회식자리에 동참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 경우 부모님과 함께 일반음식점인 주점을 들어갈 수도 있다. 보호자의 보호 하에서 말이다.

호프집, 소주방 등에서 청소년의 입장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를 해서는 안 되기에 신분증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번거롭다거나 혹여 발생하게 되는 법적인 문제가 싫어서 "청소년 입장 불가"라고 명시하기도 한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해당 지역아동센터를 개소를 한 후에 14년이 지난 지금은 주변의 변화는 말할 수 없이 변화하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최근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초변화의 세상에서 14년이면 세

번도 변화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동안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일반음식점”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도 2개 업소가 어느 날 개업했다. “노래연습장”은 직선거리 57m 로 확인되어 7미터 차이로 제한 조건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해당센터 앞에 개업한 청소년유해시설로 규정된 “오빠의 술상”“만취”“사계절 객잔”“행복하면돼지”“썬더치킨”“처가집치킨”은 모두 센터에서 직선거리 10미터~30미터 이내에 위치해 있다. 해당 유해시설 중에는 청소년유해약물과 건전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업소들도 있다. 정부의 법인화 정책에 발맞추어 해당 지역아동센터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 전환을 통한 형식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의뢰를 하였지만 점검을 나온 지자체 담당자는 “지역아동센터 앞에 술집이 있기 때문에 수렴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주었다. 14년 전에는 유해시설이 없었으나 현재는 유해시설이 개업을 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행복하면돼지”와 “썬더치킨”“처가집치킨”은 치킨집이라 괜찮다고 한다. 다만, “오빠의 술상”“객잔”“만취”는 누가 봐도 “술집”이라서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한 지적이 나온다. 누가 허가권자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관련 허가를 담당하는 보건소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 근처에 있으니 허가가 쉽지 않다고 법의 상대적 공정성을 이야기 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정부에서 부르짖는 공공성의 허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은 행정권자들에게는 내로남불이고 서민들은 지켜야만 하는 굴레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엄연한 차별이자 공정하지 못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 중에 마음을 울리는 한 문장이 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가?”에 대한 핵심적 울림이다. 그러나 정권과 정부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다함께돌봄 주변의 유해시설 설치 사례는 기회의 평등을 잃었다는 반증이고 그 과정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며, 그 결과마저도 정의롭지 못하다. 여기에 정부는 특별한 사례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동일한 조건의 특별한 센터가 한 두 개소일까?”이것이 공정이며 정의일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유해업소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 선택이나 경제 활동의 자유 등의 사회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과 백년대계를 말하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는 "청소년 보호법"이 도리어 건전한 약자들에게 불편한 옷이 되어버렸다.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해당 법은 아동복지시설들에게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35명의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찾기도, "유해시설" 없는 청정지역을 찾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다. 어차피 유해시설이 들어오면 동일한 피해를 반복적으로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시설 규정을 둔다면, 그래서 지역의 아이들을 안전한 보호를 원한다면 "유해시설"이 센터 주변에 생겨나는 일 정도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보호하고 법의 원칙이 세워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자 법 앞에 평등일 것이다.

보건소,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와 '금연스티커'를 붙이려는 노력 이전에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청소년유해업소와 유해약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원칙대로 지역아동센터 50M전방에 유해시설 업소의 설치를 제고하여 법과 원칙으로 아이들을 먼저 보호하고자 하는 건강한 사회의 이상을 잠시 꿈꿔 본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제28페이지에는 자치단체의 유휴공간이 생길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공립화 또는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케이스가 존재할까? 다함께돌봄에는 관대하며 지역아동센터에는 엄격한 규제가 결과적으로는 무늬는 공공성과 법인화를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자와 다를 바 없이 취급하는 정부의 무사안일 함이나 궁극적으로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돌봄의 '대체제'를 세우려는 복지부의 의

도를 현장 많은 종사자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책임을 현장에 돌리려는 정부의 모습부터 바꾸고 통감하며 혁신을 위한 몸부림을 해야만 한다. 그것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는 정부의 몫이다.

결론

위와 같은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법의 수호라든지, 차별의 관행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 이유는 현 촛불정권의 가치와 정신과도 다를 뿐 아니라 성과주의에 얽매인 고무줄 같은 법 적용은 언젠가 행정부에게도 부메랑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책에 적용되기를 희망한다.

01. 청소년보호법의 수호 (시설 50m내 청소년유해시설의 설치 금지)
단, 보건복지부의 청소년출입업소의 경우 제외 및 설치를 원하는 업소 주변 지역아동센터장(위원)이 참여하게 되는 위원회(아동복지전문가, 지역상인회, 지역주민과 보호자, 센터장 , 학교장 등의 교육 전문가 등)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02. 만일, 법의 수호가 될 수 없을 만큼 청소년보호법이 무용지물의 법이라면 그 법은 폐기해 달라. 타 법에서 이와 같은 적용이 될 경우, 이해관계 대립의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는 지 참고하길 바란다.

03. 법인 전환이나 긴급한 돌봄 욕구가 있는 경우 사업안내 제28페이지 명기한 대로 유휴 공간 확보와 설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 (성과급, 지자체 지원 등) 이것은 유해시설의 기본 법 원칙(유해환경, 유해약물, 유해매체 등)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

04. 다함께돌봄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차별을 통해 기본권을 헤침으로써 방과후돌봄 생태계를 이용하는 아동들 간, 반목을 가지게 하여 정서적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여 평등하고 공정함으로 유지하여 정의로운 세상이 무엇임을 돌봄 종사자들이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토론 05

—

아동복지시설 소관 법령에 환경보호관련 규정이 바람직

김 성 벽 과장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아동복지시설 소관 법령에 환경보호관련 규정이 바람직

김 성 벽 과장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이번 토론회가 아동·청소년시설 주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러한 소중한 논의의 자리에 참여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발제문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3.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교육계·유해시설·정책사업에 기울어졌다는 다양한 주장을 종합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정리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이후에 주변에 진입·난립하는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시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재승인(?)이 불허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제문에서는 사례제시를 통해 이 문제의 해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처럼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지역아동센터 반경 50m안에 유해업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사례처럼 입지조건을 '권고'사항으로 명시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설치를 용이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토론자 견해로, 이 문제는 법체계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아동복지시설의 소관법률인 「아동복지법」의 체계에서 충분히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아동복지시설 주변환경에 대해서도 유해업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이 입지조건(50m주변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부지를 선정)에 맞춰 설치된 이후부터, 「교육환경보호법」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지역아동센터 반경 50m안에 청소년유해업소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신규 설치가 아닌 기존 시설 주변에 기 운영되고 있는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를 금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장기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발제문에 제시된 것처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해야 하는 유해 업종과 업소를 규정하고 있고, 이렇게 규정된 업종·업소 분류를 인용하여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 등 교육환경 주변에 이들 업종·업소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입지조건의 문제는, 서울시 유사시설의 사례처럼 '권고'로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지조건을 준수하여 복지시설이 설치된 이후 50m주변에 유해업소가 들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설

치 운영중인 복지시설이 장소의 변경없이 시설대표 변경이나 법인화 추진 등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입지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생각도 해 본다.

결국, 오늘 토론회의 핵심주제는 "아동복지법의 기준에 따라 50m 주위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부지를 선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였고, 이 후 청소년유해업소가 설치 운영되면서, 장소가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센터대표 변경이나 법인화 등 추진시 입지조건 미충족으로 설치가 불허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며, 그 해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아동복지시설을 소관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본 토론자의 의견이다.

끝으로, 발제문에서 "청소년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강조에 대해 감사드리며, 청소년보호법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제도의 효과성, 즉 청소년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제1차, 아동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국회토론회
아동 · 청소년시설주변, 청소년유해업소 난립에 따른 국회토론회

발 행 일 2020년 10월 30일
발 행 처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 련 문 의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무국
Tel. 1544-4196 **E-mail.** hjy@hjy.kr **url.** www.hjy.kr

아동·청소년시설주변,
청소년유해업소난립에 따른 국회토론회